

제234회 영등포구의회
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
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- 미래교육과 -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11. 23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
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14호 및 제415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전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6,148,619
	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	인재육성 장학사업	535,619
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	5,613,000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
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

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 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 사항으로 보이며,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은 구립 도서관 및 마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·감성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검토결과

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
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
- 따라서,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·인성교육

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
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
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
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
수 있다.